



SmartWhistle

윤리경영 Newsletter 2017년 6월호

1. 최근 동향 및 소식

- 권익위, 국정기획위에 '김영란법' 검토 필요성 보고
- 한국기업 이사회 견제능력 OECD국가중 꼴찌
- 호텔 여기어때, '윤리경영 지도정책' 도입...미스터리쇼퍼 제도도
- 홈앤쇼핑, 윤리경영 포상 강화...위반 신고시 최대 10억원 지급
- 국정기획위, 국민권익위에서 반부패업무 분리 추진

2. 윤리경영 실천 사례

-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과 함께하는 최고의 주택금융 전문기관

3. 청렴 위반 사례

- 토지형질변경허가 직접 청탁
- 회계연도 관련 사례

4. 지식마당

- OECD 뇌물 방지 협약

5. Quiz

6. 관련 행사 및 독자 의견



최근 동향 및 소식

1. 권익위, 국정기획위에 '김영란법' 검토 필요성 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검토 필요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청탁금지법의 수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취지를 살려 시행령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서,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상황을 반영해 해당 규정을 손질할 여지를 남긴 것이다. 다만 권익위나 국정기획위 양측 모두 수정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 중 하나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상한액을 정한 시행령의 '3만·5만·10만원' 조항이다. 그간 정부와 정치권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해당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해당 법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위해 지난달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적 영향 분석'이라는 주제의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300600035&code=910100#csidxbeb7256c8481666ae3f13babc75525d

2. 한국기업 이사회 견제능력 OECD 국가중 꼴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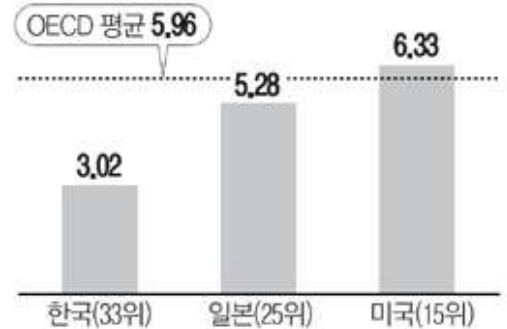
국내 기업의 이사회가 최대주주를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독립성 정도를 나타내는 '이사회 유효성' 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내부 통제

시스템인 이사회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업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의 이사회 유효성 관련 점수는 10점 만점에 3.02점을 받아 조사 대상인 OECD 33개국(이탈리아·칠레 제외)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5.96점)에 크게 못 미치는 점수다.

일본과 미국은 각각 5.28점과 6.33점을 기록해 25위와 15위에 이름을 올렸다.

주요국 이사회 활동 점수·순위 (단위=점)



*10점 만점 기준, 대상 : OECD 33개국 (이탈리아, 칠레 제외), 자료=2016년 IMD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10~2015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이사회에 올린 안건 2만7575건 중 이사회가 영향력을 행사해 안건이 부결되거나 보류·조건부 가결된 안건은 95건으로 전체의 0.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의 장기재직 비율이 높은 점도 이사회 독립성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사외이사의 장기재직 현황 탓에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업 지배구조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법적 규제보다는 기업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351063>

최근 동향 및 소식

3. 호텔 여기어때, ‘윤리경영 지도정책’ 도입...미스터리쇼퍼 제도도

종합숙박O2O 여기어때의 호텔 브랜드 'HOTEL여기어때'가 가맹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가맹점 윤리경영 지도정책'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가맹점 윤리경영 지도정책은 전국 가맹점의 윤리경영 지도와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가맹점 유치부터 법률위반을 방지하고, 개설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 및 관리·감찰을 통해 법률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하도록 매뉴얼을 준비했다. 법률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내규에 의해 패널티를 부과한다. 위반 사안에 따라 가맹해지도 즉시 가능하다. 정책은 △가맹계약 전 사전검증 △사전교육 △사후관리 등 3단계로 구성됐다. 가맹점 유치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검증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로 가맹점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해당 가맹점은 5단계 확인 절차를 거쳐 위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내규에 따라 패널티를 부과하고, 지도한다.

최치영 여기어때 프랜차이즈사업부 이사는 “HOTEL 여기어때는 철저한 교육과 컨설팅 등 관리를 통해 가맹점 운영을 돕고, 윤리경영 철학을 지속적으로 이식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ajunews.com/view/20170425083356017>

4. 홈앤쇼핑, 윤리경영 포상 강화... 위반 신고시 최대 10억원 지급

홈앤쇼핑이 윤리경영 위반 신고 시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하는 등 윤리경영 강화에 나섰다.

홈앤쇼핑은 기존 운영 중이던 ‘윤리경영 신고포상 제도’의 신고 포상금액을 기존 ‘해당 금액의 50배’에서 ‘해당 금액의 100배’로, 지급 금액도 기존 ‘최대 5억원 한도’에서 ‘최대 10억원 한도’로 늘리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홈앤쇼핑은 이번 강화책이 협력사와의 투명한 관계 유지와 내부직원의 윤리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제보 유형은 △협력업체 등 이해 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은 내부직원의 부조리 △판촉비 부당전가 및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와 같은 ‘불공정 행위’ 등이다.

홈앤쇼핑은 지난 2012년 개국 이후 임직원의 부조리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윤리경영 신고포상 제도 시스템인 ‘H&S 신문고’를 운영해 왔다.

<http://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44326>

5. 국정기획위, 국민권익위에서 반부패업무 분리 추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 업무를 분리해 별도의 부패방지구의 설립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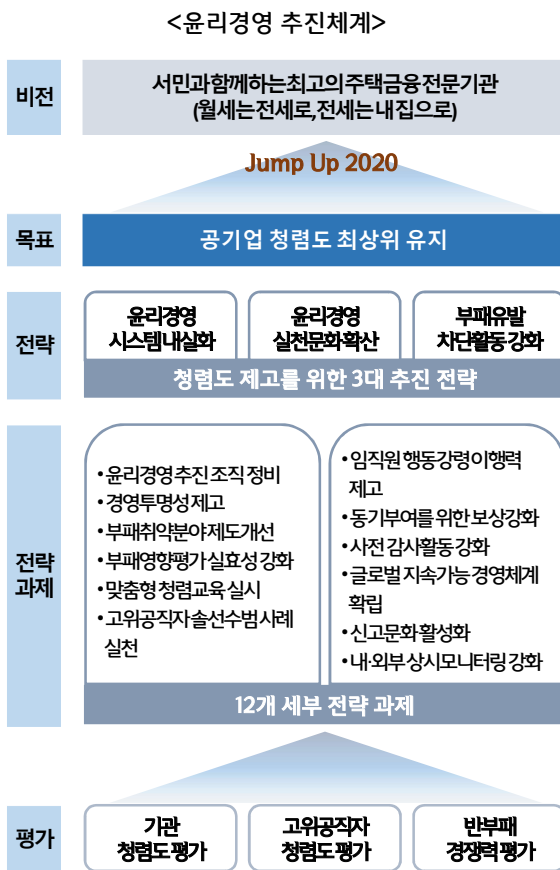
박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라는 큰 기관이 만들어졌음에도 국가청렴지수는 9년 동안 후퇴를 거듭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과 통찰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권익구제와 부패척결 청산의 문제는 조화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부패방지기구 설립안을 가다듬을 예정이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70529.99002151314>

윤리경영 실천 사례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과 함께 하는 최고의 주택금융 전문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경제의 핵심인 주택금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임직원의 윤리 의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기관이다. 공사는 ‘서민과 함께하는 최고의 주택금융 전문기관’을 비전으로, ‘서민 최우선’, ‘혁신과 도전’, ‘정도와 청렴’을 핵심가치로, ‘고객중심’, ‘미래중심’, ‘공공가치중심’을 경영방침으로 각각 설정하였다.



1. 부패 없는 공기업을 향한 노력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주택사 업자보증’은 주택사업자에게 보증이라는 수단을 사

용해 신용을 보강함으로써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보증 승인여부에 따라 주택사업자는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 천억까지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뇌물 수수 등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다 보니 공사 설립 초기에는 부패사건이 수 차례 발생하였는데, 특히 2008~2009년 동안에는 직원 3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어 징계·면직되기도 하였다.

이를 계기로 공사는 체계적으로 부패발생요인을 발굴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청렴한 공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계속해왔다. 사업자보증 심사와 승인 업무를 분리하여 조직 상호 견제기능을 강화하였고, 최고경영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사업자 보증 신청기업의 대표자 입회 하에 ‘윤리경영 실천확약서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심사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평가표의 정성지표를 대부분 정량지표로 변경하였다.

또한, 사업자 보증심사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결권자의 권한을 축소하고, 다자간 협의에 의한 의사결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한편, 보증심사위원회의 운영방식도 대폭 개선하였는데, ‘내·외부 심사위원 Pool제’를 도입하여 회차별 무작위로 심사위원을 선정토록 함으로써 외부 청탁 가능성을 대폭 낮추었다. 그 외에도 보증과 관련된 전 과정에 ‘전자보증서’를 도입하여 분실 및 위·변조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했으며, 공정을 확인 방법을 간소화하여 현장실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사 또는 금품 제공 등의 부패발생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 등을 통해 설립초기 발생했던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의 부정부패 사건은 2009년 이후 완전히 근절되었고, 공사는 기관 청렴도 등 외부평가에서도 지속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얻고 있다.

윤리경영 실천 사례

2. 다양한 윤리경영 인프라 구축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앞서 소개한 윤리경영 인프라 외에도 윤리의식을 조직문화로 승화시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윤리경영 인프라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우선 부점 별로 각 1명씩 총 38명의 윤리경영 실천리더로 구성된 ‘윤리경영 실천옴부즈만’을 별도로 구성하였으며, 이와 함께 부패사건예방을 위한 e-감사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모든 제도의 시행 시 부패요인 여부, 윤리경영 추진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실무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2013년에는 상급자의 부정부패를 목격하고도 쉽게 고발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CEO 또는 감사에게 직접 신고하는 ‘청렴 Hot Line’을 개설하였는데, 이는 CEO와 감사에게 외부메일을 통해 임직원의 부정부패 사실을 직접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신고자가 이 신고를 통해 기관의 청렴도 개선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특별승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도 공사는 CEO 윤리특강, CEO 메시지 등을 통해 윤리경영과 관련된 실천의지를 온·오프라인으로 직원들에게 수시로 전달하고 있다.

3. 윤리경영 성과보상 시스템

공사는 이러한 윤리경영 실천노력에 대한 성과보상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는데, 윤리경영의 전사적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한 부서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청렴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마일리지가 높은 직원에게 해외 연수 등의 특전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사평가와 연계한 청렴 기반도 조성하는데, 직원들이 서로를 평가하는 다면평가와 소속 직원이 부서장을 평가하는 리더십 평가에도 윤리의식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여 운영함으로써 윤리경영 실천 노력을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

4. 청렴문화 체험연수 실시

공사는 직원들의 윤리의식 체득을 위한 교육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변화하는 주변환경에 맞추어 윤리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화하여 왔는데, 반부패 청렴의식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에서부터 윤리옴부즈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문화 체험교육 등 윤리경영 리더 육성까지 직급, 성별 등에 맞게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한다.



특히, 2013년 8월 말에는 각 부점의 윤리경영 실천리더들이 1박 2일 일정으로 청백리의 고장 전남 장성으로 ‘청렴문화 체험연수’를 떠나기도 하였다. 분임토의와 강의 등을 통해 체험으로 얻은 사실들을 구체화하고 서로 공유함으로써 실천과제와 연결시키는 과정을 거쳤다.

공사는 앞으로 이러한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발굴해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깨끗하고 일 잘하는 기관’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심어줄 계획이다.

윤리경영 실천사례집, 2013

청렴 위반 사례

1 토지형질변경허가 직접 청탁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군청 담당 공무원 C에게 토지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C를 직접 찾아가 허가를 내 줄 것을 청탁을 하였다.

시사점 :

-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인가, 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를 부정 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하였으므로 개발제한구역법령상의 토지형질변경허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②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라 경우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토지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③ 담당 공무원 C가 토지 소유자 A의 부정청탁에 따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내 줄 경우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회계연도 관련 사례

○○시청에서 취득세를 담당하는 공무원 A는 평소 친분이 있는 세무사 B로부터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합계 3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았는데, 세무사 B는 공무원 A가 근무하는 ○○시청에서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그러한 계획이 없으며 어떤 청탁도 하지 않았다.

시사점 :

- ① 청탁금지법상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등과 이를 제공한 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
- ② 공무원 A는 세무사 B로부터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 와 관계 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 ③ 세무사 B는 공무원 A에게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 ④ 공무원 A와 세무사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지식마당

OECD 뇌물 방지 협약

1.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의의

OECD 뇌물방지협약은 국제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수를 처벌하고 더 나아가 '공정한 국제경쟁의 장' 구축하고 동 협약에 가입한 국가를 외국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범죄화 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OECD 뇌물방지협약은 국제상거래에서 기업들의 동등한 경쟁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동기에서 출발하였다. OECD는 주요 국제거래의 15% 이상이 뇌물비용으로 소요되고 있다고 추정하였고, 미국은 1994 ~ 2004 년까지 개도국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개도국 정부조달 등에서 미국기업이 110여건, 약 360억 달러의 경제적 기회 비용을 상실하였다고 추정하였다. 제3차 글로벌포럼에서 미 상무부장관이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뇌물제공 행위가 선진국 등 일부 기업만 금지되어 있고, 또한 각종의 부패로 인한 진입장벽 발생 시 '달려진 시장에서의 경쟁'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 하였다.

OECD 뇌물방지협약이 체결되기 이전까지는 미국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명시적으로 불법화한 유일한 국가였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기존 부패방지법을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 등 다른법률로 뇌물제공자를 민사상으로 처벌할 수 있었고 호주, 벨기에, 덴마크,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은 뇌물제공자를 형사처벌 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조세경쟁과 마찬가지로 '뇌물경쟁'은 비효율적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가 필요했다.

OECD 회원국 등 34개국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수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1997년 뇌물방지협약과 그 주해에 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약의 확산과 충실한 이행을 위한 감시체제의 도입에 공동 합의하였다.

OECD 뇌물방지협약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그리고 캐나다가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1999년 2월 15일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국내 이행을 위해 지난 1999년 1월 4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였다.

2. OECD 뇌물방지협약의 특징

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대규모 공사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외국의 고위관리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는 정상적 영업활동에 따른 비용의 일부분일 뿐, 범죄라는 인식은 일반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못하였다. 이런 가운데 주요 국제거래의 15% 이상이 뇌물비용으로 추계되기도 하였다. 이는 각국의 국내법 체계가 내국인을 주된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사법공조의 미성숙으로 국제적인 뇌물공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도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UK 뇌물 수수법	美 해외부패방지법 (FCPA)	OECD 뇌물방지협약
강도	★★★★★	★★★★★	★★★
발효	2011년	1977년	1999년
범위	외국 공무원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뇌물 공여도 처벌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처벌 (회계 관련 조항도 있음)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처벌 권고 (협약국에 한함)
특징	촉진비용에 대한 예외조항 없음 벌금 최고한도 없음	촉진비용에 대한 예외조항 있음 2백만달러 이하의 벌금	협약국간 상호점검 및 구두, 서면 보고 등 독려 압력

지식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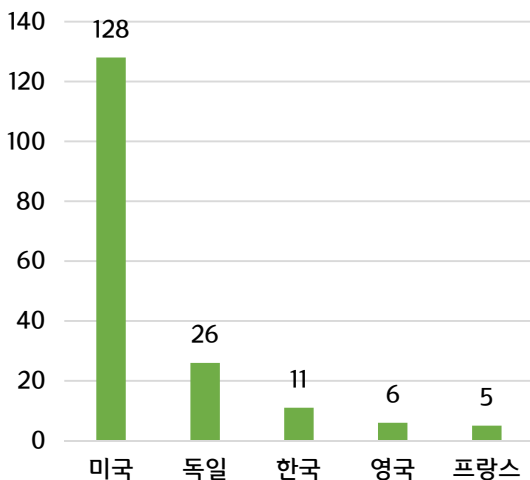
OECD는 이에 따라 1994년 이후 여러 차례 관련 권고를 채택하여 각국이 투명성을 강화하고, 뇌물에 대한 손금처리를 금지토록 요청하고, 사법 공조를 강화하도록 권고해 왔으며 이 같은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본 것이다.

OECD 협약의 특징은 뇌물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만 규율한다는 점이다. 뇌물을 주는 행위만 처벌하는 것이 OECD 뇌물방지협약의 한계로 지적될 수도 있으나, 국가주권의 원칙상 자국의 형사관할권이 미치지 못하는 외국공무원을 처벌할 수 없는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적어도 가입국간에는 협약이 효과적으로 이행된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뇌물공여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해당국간 사법공조가 필수적이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수뢰사실이 드러나게 되며, 이 경우 해당 공무원 소속국은 국내 뇌물법으로 동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의 경우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고려하여 제외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결국 포함하기로 결정되었으며, 반면 정당에 대한 뇌물은 제외되었다.

OECD 뇌물방지협약 당사국의 해외뇌물 제재 건수 (1999~2014 누적)



3. 뇌물방지협약 주요내용

3.1 뇌물공여의 구성요건

- 국제상거래에서 사업상의 또는 기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외국 공무원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어떤 행위를 행하거나 행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직접 또는 중개자를 통하여 '부당한' 금전상의 이익 또는 기타 이익을 외국 공직자나 제3자를 위하여 당해 공직자에게 제의,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
- 뇌물제공행위는 이익의 가치나 결과, 해당지역의 관습, 당국의 관용, 또는 거래를 위한 뇌물공여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행위 자체로서 범죄임

3.2 뇌물공여죄의 대상

- 외국공무원은 입법, 사법, 행정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선출직과 임명직을 포함하며, 외국을 위하여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자
- 공적 국제기구의 직원 또는 대리인도 적용대상임
- 일당체제 국가의 당료들과 같이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개인도 대상이 될 수 있음

3.3 관할권과 범죄인인도

- 뇌물공여죄가 전부 또는 일부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하면 각 당사국은 이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
-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자국민의 해외 뇌물죄에 대한 기소관할권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관할권이 경합될 때에는 당사국들이 협의함

국가청렴위원회, OECD 뇌물방지협약 가이드북

Quiz

1. 다음 중 OECD 뇌물방지 협약의 주요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뇌물공여의 구성요건
 - ② 포괄적인 틀 내에서 일관된 프로세스의 사용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 ③ 뇌물공여죄의 대상
 - ④ 관할권과 범죄인인도

2. 다음 중 OECD 뇌물방지 협약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협약국간 상호점검 및 구두, 서면 보고 등 독려 압력
 - ② 촉진비용에 대한 예외조항 있음
 - ③ 2백만달러 이하의 벌금
 - ④ 촉진비용에 대한 예외조항 없음

3. 다음 중 ISO 31000의 위험평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외국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범죄화 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 ② 뇌물방지협약은 국제상거래에서 기업들의 동등한 경쟁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동기에서 출발하였다.
 - ③ OECD는 주요 국제거래의 5% 가 뇌물비용으로 소요되고 있다고 추정하였다.
 - ④ OECD 뇌물방지협약이 체결되기 이전까지는 미국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명시적으로 불법화한 유일한 국가였다.

4. 다음 중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른 해석으로 옳바르지 않은 것은?
 - ①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등과 이를 제공한 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
 - ②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경우에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 ③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한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 ④ 부정청탁에 따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내 줄 경우 형사처벌 대상

과월호 Quiz 정답 및 해설

1. 답 ③ 이 국제규격에 서술된 일반적 접근법은 특정상황이나 범위에 대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원칙과 지침을 제공한다.
2. 답 ④ 재무보고개선은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ISO 31000이 요구하는 원칙이 아니다.
3. 답 ④ 위험처리는 ISO 31000의 위험평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4. 답 ②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는 부정청탁이 아니다.

관련 행사

1.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윤리경영 학회 주관 '윤리경영대상' 수상

해양환경관리공단(KOEM, 이사장 장 만)은 지난 26일 한국윤리경영학회가 주관하는 2017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윤리경영대상'을 수상했다.

윤리경영대상은 한국윤리경영학회가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기업의 윤리경영을 위한 시스템과 성과, 최고경영자의 의지, 사회공헌 활동 및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한다. 이번 심사에서 공단은 최고 경영자의 윤리경영 철학과 실천의지, 윤리경영 시스템 내재화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529000274>

2. “아시아 옴부즈만 화합과 논의의 장” 제15차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총회 및 ‘2017 평창 글로벌 옴부즈만 컨퍼런스’ 열려

국민권익위원회와 강원도는 세계 옴부즈만의 경험을 공유하고 아시아 옴부즈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15차 아시아옴부즈만협회(Asian Ombudsman Association, AOA) 총회 및 2017 평창 글로벌 옴부즈만 컨퍼런스를 5월 16일(화) 부터 19일(금) 까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독자 의견

본 뉴스레터와 관련된 건의 및 개선사항이 있으시다면, 메일(advisor@jcons.co.kr)로 의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창립 20주년을 계기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아시아 옴부즈만의 발전과 미래”라는 주제로 총 4일간 열리며, 지방·청렴옴부즈만 운영사례 등을 논의하는 국내 옴부즈만 역량강화워크숍과 학술대회도 구성되어 그 어느 대회 보다 다채롭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전망이다.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조정자, 중재자, 감시자의 뜻으로, 1809년 의회 대리인으로서 법관과 행정부 공무원들의 법률 준수를 감시하는 옴부즈만을 스웨덴이 설치한 것이 오늘날 옴부즈만의 시초가 되었다. - 현대적 의미에서 옴부즈만 독립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바탕으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와 불합리한 행정시스템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많은 국가에서 부패방지시스템의 주요 요소로도 활용 중이다.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200827>

3. 아태지역 반부패기관에 청탁금지법 시행 경험 소개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부터 이틀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제8차 아태지역 반부패기관장 회의(Anti-Corruption Agency Forum, ACA 포럼)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정책의 다양한 활동과 성과를 공유한다.

ACA 포럼은 아태지역 반부패기구 간 협력 및 반부패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개최되며, 이번 포럼은 ‘부패 척결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아태지역 12개국 반부패기구 장관급 인사 등 약 30명이 참석하고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가 주관한다.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205618>